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2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박주민·서영석·이언주

백혜련 • 박희승 • 김 윤

박용갑・박해철・강선우

박홍배 • 박지원 • 이수진

전진숙 • 고민정 • 전현희

차지호 · 임미애 · 박선원

정준호 • 이재명 • 이정문

서미화 · 채현일 · 소병훈

장종태 · 김남희 · 박홍근

한정애 • 한창민 • 용혜인

김원이 • 이재강 • 진성준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 대학 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

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대란"이란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발표에 반대하여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집단 사직함으로써 발생한 응급실 이용 곤란, 대학병원 진료 지연 등 의료공백에 따른일련의 상황을 말한다.
- 2. "의료대란 피해자"란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유족"이란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의료대란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의료대란에 관련된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은 의료대란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 ①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국가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보건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되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사실조사)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대란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제5조의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 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견제출 등) ① 신청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보상위원회에 의료인이나 관련 전문가(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의료인등으로부터 의견을들을 수 있다.
-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피해보상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 제13조(피해보상 결정 등의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소요된 기간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주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실조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 제16조(의료비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외에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종류, 지급 방법·기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법은 정부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 제시까지 효력을 가진다.